

KISO 정책규정 해설서

KISO policy reference book

머리말

인터넷이 인간의 표현활동에 안겨준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거나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공적 표현활동의 주체가 되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공적 표현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크게 신장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일반 시민의 자유롭게 활발한 표현활동은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됨으로써 이제 인터넷이라는 소통수단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의 이러한 장점이나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이 매우 저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인터넷의 역기능 확대의 원인으로

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표현활동 가운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상의 표현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위법한 표현활동 등이 행해지고 있고, 인터넷 매체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그것이 더욱 쉽게 행해질 뿐만 아니라 정보의 급속한 유통으로 그 피해가 크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에 유의하여, 한편으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다른한편으로 이용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에는 그 사이에 개별적으로 나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재정리한 ‘통합정책규정’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들이 KISO의 정책규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정책규정도 규정의 형식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어려운 법률용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KISO 정책규정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KISO 정책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부터 통합정책규정에 대한 해설서의 편찬을 시작하여 약 1년

여의 검토를 거쳐 이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정책규정 제정의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정책규정 전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게시물 관련 정책과 연관검색어 관련 정책에 대한 해설을 담았고, 제5장에서는 선거기간중의 특칙을,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공익을 위한 특별 정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해 KISO 정책위원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집필을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제1장과 제6장은 황용석 교수님이, 제3장은 김기중 변호사님이, 제4장은 정경오 변호사님이, 제5장은 배영 교수님이 각 책임을 맡아 작성해 주셨습니다. 집필에 큰 노고를 쏟으신 정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들, 나아가 관련 행정업무나 연구에 종사하는 분을 포함하여 KISO의 자율규제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ISO 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눈부시게 변화·발전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장 등 서

로 충돌하는 헌법적 가치 사이에 적정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자율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10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

이 해 완



Contents

01	정책규정 해설서를 내면서	07
02	정책규정 전문	15
03	게시물에 관한 정책	33
04	검색어에 관한 정책	72
05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95
06	차별적 표현 완화 등을 위한 특별 정책 등	113

01

정책규정
해설서를 내면서



01절 | KISO 정책규정의 의미

1. 자율규제와 정책규정

KISO와 인터넷자율규제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09년 3월에 출범한 인터넷자율규제기구로서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국내 주요 포털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KISO는 회원사들이 이용자 게시물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내용규제와 연관검색어 처리 방식과 같은 서비스정책 및 이용자의 권리와 관련한 공통의 현안을 처리하는 기준을 만들고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KISO가 수행하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란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민간 또는 기업이 스스로의 활동을 규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자율규제의 특징이다.

▶ 여기서 말하는 ‘자율’의 의미는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개인적 자율’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공동의 관심사와 목적을 가진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부여한 조직의 권위와 일정한 권한을 바탕으로

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집단적 자율(자율규약 또는 자율정책 등)을 의미한다.

▶ 또한 자율규제는 공동규제(co-regulation)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자율규제는 정부의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무규제(un-regulation)가 아니라 국가의 법령에 의한 규제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법령의 위임을 받은 자율규제와 다르게 KISO는 재정이나 의사결정구조에서 정부 등의 개입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자율규제(voluntary self-regulation)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행동규약으로서 정책규정의 의미

▶ KISO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위원들이 관련 법률 및 판례, 학설 등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업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그런 점에서 회원사들이 합의하고 공동으로 적용하는 정책규정과 같은 조직의 표준규칙(standard rules) 또는 정책원칙(the principle of policy)은 자율규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원리가 된다. 정책규정은 일종의 행동규약(code of conduct),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협약(voluntary and co-operative agreement) 또는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KISO의 정책규정과 같은 민간집단의 행동강령은 국가법과 사회적 일반규범의 틀 안에서 구성되며, 법이나 제도가 담지 못하는 내용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메워주는 규제의 보완수단으로 기능한다.

▶ KISO의 정책위원회는 회원사들의 게시물 및 서비스 처리에 관한 행동기준인 ‘정책결정’의 수립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심의결정’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한다. ‘정책결정’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KISO의 행동기준 또는 행동규약이며, ‘심의결정’은 정책결정의 규정에 기반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판정한 결과물을 뜻한다.

▶ 정책결정은 회원사들이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와의 ‘사적 계약’인 약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규약체계이다. 이 규약은 민간기업이 보호받아야 하는 영업의 자유영역과 강제성을 띤 법령의 틀 사이에 존재한다. 즉, 정책결정은 국가 법의 기준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며, 법이 담고 있지 못한 내용과 절차를 자율적으로 보완한다. 이러한 정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KISO회원사로 한정된다.

2. KISO정책규정의 결정구조

▶ KISO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정책위원회, 사무처, 기타 특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는 KISO의 운영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가 최상위 기구이긴 하지만, 정책결정과 같은 중요한 규칙제정 권한은 정책위원회에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다.

▶ 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는 회원사 소속이 아닌 인터넷 자율 규제 전문가 5인(위원장 포함)과 회원사의 게시물 관리·운영 부서의 책임자급 3인 등 총 8인이 활동하고 있다.

▶ 정책위원회는 합의에 기반한 전문가 위원회 구조를 띠며, 정관 제20조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구 강령 및 정책결정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안 마련
2. 위원으로부터 요청 받은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한 정책결정
3. 합리적인 게시물 정책 수립을 위한 기타 사업

▶ 한편, 사무처는 신고센터 운영, 이사회 및 정책위원회 운영 등 실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와 정책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위원들의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한다(「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5항). 심의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제2호).

정책결정의 경우에 전원합의를 요건으로 한 것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토론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다차원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숙의적(熟議的) 합의 구조를 통해 해결책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만 개별 게시물에 대한 결정의 경우에 전원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심의는 신속성을 그 생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각사의 게시물 정책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의사결정은 외부의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독립적이다.

02절 | KISO 정책규정 해설서의 구성

1. 정책규정의 통합화 작업

▶ KISO의 정책결정은 초기에 제3자 게시물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이후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을 시작으로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 초기의 정책결정은 게시물 심의를 위한 기준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심의 게시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결정이 이루어져 왔다. 최초의 정책결정은 2009년 4월 2일 이루어진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 결정이다.

이후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23개의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다양한 후속 결정들이 내려지면서, 정책결정이 내려진 순서를 기준으로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왔다.

▶ 그러나 게시물 심의 등을 의뢰하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심의사례에 기반해서 분산적으로 나열된 정책결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정책결정의 조문 형식이 다르고, 개정된 사항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 이에 KISO는 2014년 6월 17일, 기존 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총망라하여 통합한 ‘정책규정’을 제정했다. 이 해설서는 2014년 3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기존 정책결정을 체계화하는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것이다.

정책 규정은 △총칙 △게시물에 관한 정책 △검색어에 관한 정책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차별적 표현 완화 등을 위한 특별 정책 등 5개 장과 2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정책규정 해설서의 활용

▶ 이 해설서는 기존에 KISO가 내린 정책결정을 통합한 ‘정책 규정’에 대한 해설서로서, KISO 회원사들이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게시물 등에 대한 처리기준을 담고 있다.

▶ 해설서의 작성 목적은 KISO 정책규정을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모든 정책규정들의 △제정 취지, △주요내용,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규정의 배경과 처리방식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 해설서를 이용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구성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정책규정과 법률과의 관계 : 법률이 상위에 위치하며, 정책규정은 법률에 대한 정책위원회의 해석에 기반해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자발적으로 그 규정을 수용하는 회원사들에 한정 적용되는 자치규약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기존 법령 및 판례에 기초해서 마련된 것으로 법률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 정책규정의 적용 범위 : KISO 회원사들에게만 한정된다.
- 정책규정 해설서의 순서 : KISO 정책규정의 조문 순서를 따르고 있다.

02

정책규정 전문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검색어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 회원사가 지켜야 할 게시물 또는 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소통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시물”이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서 회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란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연관검색어”란 회원사가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 데이터베이

스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검색어를 입력한 이용에 바로 이어 입력될 확률이 높은 검색어를 화면에 자동으로 제시하는 기능에 의하여 제시되는 검색어를 말한다.

4. “자동완성 검색어”란 회원사들이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할 때 그 입력이 끝나기 전에 입력된 문자열을 포함하는 검색어 중 자주 입력되는 완성된 형태의 검색어를 기술적으로 선별하여 검색창 주변에 목록으로 제시하는 기능에 의하여 제시되는 검색어 목록을 말한다.
5.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6. “후보자”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감의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7.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감의 예비후보자등

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8. “후보자정보”란 후보자의 사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등의 정형화된 정보를 말한다.
9. “선거기간”이란 「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선거기간”을 말한다.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

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지방의회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10. “국가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을 의미한다. 소속기관 범위는 해당부서의 직제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11.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 기초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함), 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 면, 동, 리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 교육감,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2장 게시물에 관한 정책

제1절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

제3조(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 등’이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2. 임시조치
3.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등 처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창작 게시물
2. 스크랩 게시물
3. 딥링크 게시물(특정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

제4조(포괄적 임시조치 등) ①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

제 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URL 적시가 없더라도 문제가 된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시조치 등 처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창작 게시물
2. 스크랩 게시물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등 결과를 통보 이후 추가적인 신고 및 처리 절차는 제3조를 따른다.

④ 제1항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제5조(처리의 제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

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 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수정 2014.10.22]

제5조의2(게시물 심의 요청) 회원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2]

제6조(자율적 임시조치 등) ①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회원사는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신고가 없음에도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

제7조(처리 대상) 자율적 임시조치 등의 처리대상은 다음 각호 중에 하나로 한다.

1. 창작 게시물
2. 스크랩 게시물 (단, 언론 기사의 스크랩 게시물은 제외)

제2절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한 게시물 처리

제8조(국가적 법익 침해 게시물 처리) 회원사는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이나 외환 등과 같은 국가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임시조치 후 게시물 심의

제9조(심의요청) 회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게시물 게시자가 회원사가 정한 기간 내에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한 경우
2. 그 밖에 회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통지의무) ① 회원사는 제9조 제1호에 따라 KISO에 심의요청을 할 경우 해당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에 따라 KISO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회원사는 임시조치와 동시에 혹은 임시조치 후 제9조 제2호에 따라 KISO에 심의요청을 할 경우 해당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와 관련하여 KISO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본조 삭제 2014.10.22]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

제12조(원칙)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예외적 삭제)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3.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

5.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의 검색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
 6.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7.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도박 등 불법 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8.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9.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10.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상업적인 용도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 ②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검색어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의2(처리절차) ① 회원사는 제13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검색어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대상 검색어를 특정하고, 침해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회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9.22]

제4장 선거기간 중 인터넷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제14조(목적)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읽고, 듣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인터넷은 이를 위한 중요한 소통 및 참여의 공간이다.

이 장은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검색 서비스의 제공) 회원사가 제공하는 선거관련 검색 결과는 각사가 정보서비스를 위해 기술적으로 채택한 알고리즘에 따르며 선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후보자정보의 제공) ① 선거기간 동안 회원사가 제공하는 후보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한다.

② 회원사가 인물정보와 구분하여 후보자정보를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후보자 이름 등을 검색어로 하는 검색결과에서 동명이인 후보자정보를 화면에 노출하는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구가 서로 다른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선거구 아이디 순서
2. 선거구가 같은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호 순서

제17조(검색어의 처리)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권리침해를 사유로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
2. 예비후보자
3.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4.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2.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서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18조(게시물의 처리) ① 선거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른다.

1. 선거기간 중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후보자일 경우 회원사는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접수단계에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후보자 등에 대한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 회원사는 핫라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처리 지침을 요청하는 등 불법 또는 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

는 결정에 따른다.

②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한 경우에도 제1항 제1호를 준용한다.

제19조(적용범위) 이 장의 정책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5장 차별적 표현 완화 등을 위한 특별 정책

제1절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제20조(목적) 인터넷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 각 회원사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은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하고, 그 표현이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을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절은 회원사에게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게시물 제한)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제2절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제22조(목적) 본 절은 생명존중의 인터넷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3조(게시물 등 제한) 회원사는 자살과 관련된 유해 게시물이나 커뮤니티를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한다.

제24조(커뮤니티 등 제한) 회원사는 카페 등 커뮤니티 명칭에 자살·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방조 또는 유인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명칭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

제25조(긴급한 게시물 특칙) 회원사는 신고 등을 통해 자살 시도의 긴급성과 위험성이 있는 게시물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제26조(검색 특칙) 회원사는 '자살' 및 '동반자살' 검색어의 검색 시 자살 예방 상담기관 등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 [본절신설 2014.10.22]

제27조(목적) 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 계정 및 게시물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8조(계정) ① 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계정 폐쇄 요구 등) ①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2.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3.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

②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

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정책결정과의 관계) 이 규정의 시행으로 기존 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03

게시물에 관한 정책



01절 |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관한 임시조치 등

1. 연혁 및 제정 취지

▷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신설 규정되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를 임시조치라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는 규정을 두는 외에 임시조치의 구체적인 기준과 효과 등에 관하여 더 이상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 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

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당시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은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게시글에 관하여 각사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특히 도입되자마자 널리 이용되던 임시조치의 경우, 그 허용 범위와 기간, 임시조치 기간 만료 후의 게시물에 대한 조치 등이 회사별로 달라, 동일한 내용의 게시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게시된 서비스에 따라 조치 결과에도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였다.

▶ 또한 새로 도입된 제도의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6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임시조치’의 이름으로 차단되거나 기간 만료 후 삭제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

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 이에 당시 주요한 인터넷서비스를 운영 중이던 7개 사업자들은 처리기준의 통일을 모색하고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2009년 3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를 출범시켰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라 한다.)는 2009년 4월 2일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 (정책결정 제1호)과 2009년 6월 29일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 (정책결정 제2호)을 결정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임시조치가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제1절 중 임시조치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제3조, 제4조, 임시조치의 제한에 관한 제5조,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조치에 관한 제6조, 제7조는 모두 정책결정 제1호, 제2호를 그대로 정책규정에 포섭한 것이다.

▶ KISO에 가입한 회원사들(이하 문맥에 따라 '회원사' 또는 '서비스제공자' 등을 구분없이 사용한다)은 KISO의 정관과 회원사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KISO가 정한 기준(정책결정과 심의결정 등)을 자신의 서비스에 적용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KISO가 회원사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자율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 및 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5항이다.

▶ 헌법재판소도 2012년 5월 31일 선고한 2010헌마8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리 침해 주장자의 ‘소명’을 요구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영리적 목적과 사인의 사생활, 명예, 기타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차단하려는 목적 사이에서 해당 침해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가 가능함을 인정한 바 있다.

3조 | 임시조치 등

제3조(임시조치 등)

-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 등’이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2. 임시조치
 3.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등 처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창작 게시물
 2. 스크랩 게시물
 3. 딥링크 게시물(특정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

1. 제정 취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청의 절차와 조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정책규정 제3조는 위 제44조의2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침해를 받은 자’의 조치 요구 절차와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조치 요청의 절차 - 제1항

1) 적용대상

▶ 본 조의 적용 대상은 ‘게시물’ 이다. 게시물이란 게시판에 게재된 정보라는 의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문자, 화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 로 정의되어 있다. 요컨대, 법률상 ‘게시판’ 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 둘째, 일반에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 셋째, 서비스 운영자가 직접 정보를 게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게재한 것을 말한다.

▶ 정책규정은 제2조 제1항에서 “게시물이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서 회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고, 위 법규정과 문자적인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2) 임시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 가 해

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받은”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일정한 사법적 판단을 이미 “받은” 자에 한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나, 운영의 현실은 침해에 관한 ‘당사자’라면 그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 2010헌마88호 사건에서 ‘권리침해 주장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 정책규정 제3조 제1항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신청의 요건

▶ 신청인은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임시조치 등을 요청해야 한다.

▶ 첫째 요건인 제1항 제1호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본인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사실을 본인이 소명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 제1항 제2호의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요건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위 2010헌마88호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리침해 주장자의 ‘소명’ 을 요구함으로써 법익침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권리 침해 주장자의 ‘소명’ 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는 제1항 제3호는 ‘포괄적 요청에 의한 조치 요구’ 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포괄적 요청’ 이란 구체적인 게시물을 지정하지 않고(URL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일정한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물을 일괄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포괄적 요청에 의한 조치 요구를 배제하는 취지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대상 게시물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제공자의 자의적 조치를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포괄적 요청에 의한 조치도 제4조에 규정된 예외적 사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취할 수 있는 조치 -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로 그 정보의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를 나열하고 있으며, 정책규정 제3조 제2항은 서비스제공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삭제, 임시조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정책규정 제3조 제3항의 ‘삭제’,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1항의 ‘삭제’ 3항의 ‘임시조치’와 그 의미가 같은 것이다. 정책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상 ‘반박내용의 게재’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다양성, 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자가 법정 사항인 ‘반박내용의 게재’ 외의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처리대상 - 제3항

▶ 인터넷 게시물은 이용자가 직접 작성하거나(‘창작 게시물’) 다른 이용자가 그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하여(‘펌’ 또는 스크랩) 게시하거나(‘스크랩 게시물’) 대상 게시물의 바로가기 링크(URL)를 제시하는 방법(‘딤링크 게시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 뉴스기사 등을 스크랩한 게시물 중, 일부를 전재하지 않고 부분만을 편집한 경우 혹은 이미 수정된 기사임에도 이전 기사를 전재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언론사 등이 저작권을 이유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도 삭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정책규정은 위와 같은 모든 형식의 게시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제4조에 따라 포괄적 요청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딥링크 게시물’을 제외하고 ‘창작 게시물’과 ‘스크랩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실체적 판단 기준 - 어떤 경우를 권리침해로 볼 것인지 문제

▶ 정책규정은 어떤 경우를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로 볼 것인지에 관한 실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도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이나 정책규정 모두 권리침해 여부 판단 기준은 물론이고, 명예훼손의 우려만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 등이 가능한 것인지, 명예훼손이 명백할 경우에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기준에 의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는 항상 문제가 되어왔다.

KISO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법률과 법원의 판례 및 일반적인 해석기준을 고려하여 사안 별로 판단하기로 하였다.

4조 | 포괄적 임시조치 등

제4조(포괄적 임시조치 등)

- ①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URL 적시가 없더라도 문제가 된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요청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임시조치 등 처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창작 게시물
 2. 스크랩 게시물
-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등 결과를 통보 이후 추가적인 신고 및 처리 절차는 제3조를 따른다.
- ④ 제1항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1. 제정 취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이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삭제’ 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다만, 다수의 게시물이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등의 상황에서 대상 게시물을 그대로 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피해의 확산을 차

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별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고 일정 범위의 게시물을 포괄적으로 제외해 달라는 요청과 그에 따른 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2. 주요 내용

포괄적 임시조치가 가능한 경우 - 제1항

▶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①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며, ② 피해자는 URL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대상 게시물을 특정해야 하며, ③당사자임을 밝히고 침해 사유를 소명한 경우이어야 한다.

▶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 되는 경우란, 다수의 게시물이 게시되고 있어 당사자가 개별 게시물을 일일이 지정하기 무척 곤란하며, 이러한 게시물이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처리대상 - 제2항

▶ 일반적인 경우 임시조치는 모든 형식의 게시물에 대해 가능하다(제3조), 포괄적 요청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

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딥링크 게시물’을 제외하고 ‘창작 게시물’과 ‘스크랩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주의사항 - 제3, 4항

▶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는 수십만, 수백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 중에 대상 게시물을 찾기 어렵다는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게다가 포괄적 요청에 의해 다수의 게시물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별 게시물의 특성이나 개별적인 주장 내용의 차이 등을 일일이 고려하지 못한 결과 적법한 게시물까지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포괄적 요청에 의해 게시물을 처리한 경우에도, 그 처리 이후에는 게시물 처리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 이에 정책규정은 제4조 제3항에서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그 통지를 한 이후에는, 다시 일반 원칙에 따라 권리침해 주장자가 개별 게시물의 URL을 지정하여 신고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 또한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

야 한다는 점을 제4항에서 주의적으로 규정하였다.

5조 | 처리의 제한

제5조(처리 제한)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수정 2014.10.22]

1. 제정 취지

▶ 정책규정 제5조(처리 제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설정한 게시물 처리정책의 요체이며 정수이다.

▶ 대법원은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이래 일관하여 공적 존재,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보호되어

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된다” 고 판시해 왔다.

▶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는 이러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상 게시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적 존재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 기준에 따라 대상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공적 존재 및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표명까지 무차별적으로 차단되는 결과가 되었고,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임시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만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기준인 정책결정 제1호(2009년 4월 2일)와 제2호(2009년 6월 29일)를 마련하게 된 것이고, 위 제5조는 정책결정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2009년 6월 29일 정책결정 제2호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정책결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KISO 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수범자(受

範者)이지 소지자(所持者)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면서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판례의 일관된 경향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2.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외 - 제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다만,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제외되어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로 허용하였다.

▶ 이 규정은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이나 그 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헌재 1994. 12. 29. 헌마120; 헌재 1995. 2. 23. 90헌마125 등)를 근거로 입안되었다.

▶ 위와 같은 규정을 정책으로 결정한 이후에, 대법원도 2011.09.0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서 동일한 판단을 하였

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민사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2011.12.2.선고 2010나94009판결, 대법원(2012다2781호)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이른바 ‘박원순 판결’}이 있기는 하나, 그 판단도 언론보도가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해야 한다는 등의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의 피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임시조치의 주체에서 제외한 정책규정 제5조 제1항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한 제한 - 제2항

▶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하여는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소명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시조치가 제한된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5항)

▶ 본 조의 적용대상인 공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적 존

재’ 또는 ‘공인’보다 좁은 개념이다. 본 조에서는 공인을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존재인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로 한정하였다. 공인에 대한 게시물이 그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에는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적용대상인 공인의 범위를 좁게 설정한 것이다. 2009년 6월 29일자 제2호 정책에서 결정되었다.

1)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범위

▶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중앙행정부처의 장 등 정무직 공무원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공인을 포함한다.

-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며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은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 경력직공무원에는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법관, 검사, 경찰, 군인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 있다.
-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으며,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

의가 필요한 공무원과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은 장관이나 차관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한이나 지위는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그 외에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존재도 이 규정에 의한 공인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동안 심의결정 사례에 의하면, 외국 주재 대사(2013심45), 정당(2013심40), 국립대학교 및 총장(심의-제2011-06-01-02), 대통령 후보자(2012심7)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포함이 되고, 지상파 방송사(2014심8), 사립대학교(2013심46)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구분	적용대상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대통령(헌법 제67조①), 국회의원(헌법 제41조①), 자치단체장(지방자치법 제94조),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법 제31조),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교육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	대법원장(헌법 제104조①), 대법관(헌법 제104조②), 헌법재판소장(헌법 제111조④), 감사원장(헌법 제98조②), 국무총리(헌법 제86조①), 원수(元帥)(군인사법 제17조의2 ②)
법률에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	<p>정부조직법상 정무직 공무원 국무위원(제12조③), 대통령 비서실장(제14조②), 국가안보실장(제15조②), 대통령경호실장(제16조②), 국무조정실장·차장(제20조②,③), 국무총리비서실장(제21조②), 국민안전처 차관(제22조의2②), 인사혁신처장(제22조의3②) 법제처장(제23조②), 국가보훈처장(제24조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5조②), 행정각부 차관(제26조②), 국세청장(제27조④), 관세청장(제27조⑥), 조달청장(제27조⑧), 통계청장(제27조⑩), 병무청장(제33조④), 방위사업청장(제33조⑥), 문화재청장(제35조④), 농촌진흥청장(제36조④), 산림청장(제36조⑥), 중소기업청장(제37조④), 특허청장(제37조⑥), 기상청장(제39조③)</p>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법 제15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사무차장(헌법재판소법 제18조①,②), 감사위원(감사원법 제5조②), 감사원 사무총장(감사원법 제19조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차장(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④, ⑥), 국가정보원장, 차장(국가정보원법 제7조②,③), 대통령 경호실 차장(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③),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처법 제4조②),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사무차장(국회사무처법 제5조②), 국회의장 비서실장(국회사무처법 제6조②), 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①), 국회입법조사처장(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①), 국회도서관장(국회도서관법 제4조②)
대통령령에 정무직으로 정한 자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②), 대통령 경호실 차장(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②), 국가안보실 차장(국가안보실 직제 제4조①),
KISO 결정상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외국주재 대사(2013심45), 정당(2013심40), 국립대학교 및 총장(심의 제 2011-06-01-02), 대통령 후보자(2012심7)

2)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범위

▶ 사생활은 공적 업무와 무관하나, 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그 사생활에 대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적 업무와 사생활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 그 동안의 심의사례에 의하면, 가족간의 대화 녹취록에 수록된 가족들간의 다툼(2013심26), 확인되지 않은 불륜 관계(2013심12)는 공적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이라고 보았으나, 공직자의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의 주장(2012심7),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관계 관련 사항(2012심17)은 공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 신청인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이후에 임시조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에 관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제2항의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4항)

3) '명백한 허위사실' 여부의 판단 기준

▶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하므로, 신청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정책규정은 소명자료 제출책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문의 구성 형식과 권리침해 주장자에게 소명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취지에 비추어, 그 소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소명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명백한 허위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1) 황창근, KISO 정책결정 제3, 4호에 대한 평석, 키소저널 제2호, 2010. 1.

▶ 그 동안의 심의사례에 의하면 공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이 아닌 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되는 사안을 직접적으로 판결한 1심 판결문(2012심18), 해당 게시물과 유사한 사항을 배포한 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문(2013심18)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인정되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주장되는 여러 사실 중 일부에 대한 불기소이유고지서(2013심47), 단순히 명예훼손 사항이 존재하는 기사의 삭제 사실(2013심30), 종교 관련 사항에 대한 종교 관련 임의단체에 의한 확인서(2014심20)는 허위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인의 입증이 실패한 것으로 보았다.

▶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관한 게시물에 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 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본 항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그 표현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 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면책되는 기준인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예상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한다.¹⁾ 하지만 정무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을 허용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설불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제한적 범위의 공인에 대한 게시물에 관하여 ‘명

백한 허위사실’ 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판례에 의한 언론사 면책 기준인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할 것이므로, 위 기준이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공직자, 언론사 등의 공인에 대한 제한 - 제3항

▶ 정책결정 제2호에 의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의 임시조치 요청을 엄격하게 제한하되, 그 대상을 ‘정무직 공무원 등’ 으로 좁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적 존재나 공인에 대하여 감시와 비판을 하는 게시물에 대한 취급 기준이 불분명하였다.

▶ 예를 들면, ‘일반 검사’ 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 에 준하는 취급을 하여 ‘명백한 허위사실’ 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일 수 있다. 반면, 일반 검사도 공직자로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할 주체이기도 하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였다.

▶ 법원은 공직자나 언론사 등의 공인에 대한 보도에 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인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2년 7월 25일 정책결정 제14호로, 위 판례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여,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대법원 2003.07.08. 선고 2002다64384 판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

▶ 정책규정 제5조 제3항 제2호의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란 판례가 인정하는 기준과 완전히 동일하며, 역시 신청인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임을 소명해야 한다.

▶ 그동안의 심의 사례에 의하면, 일반 검사(심의-제2011-09-01호), 일반 판사(2014심7), 지상파 방송사(2014심8), 사립대학교(2013심46), 국가 기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2012심7, 2012심5)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 본 항의 다른 요건인 업무관련성, 공적관심사,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의 의미는 제2항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 제3항의 ‘그 업무에 관한 것’ 에는 해당 공직자가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 는 포함된다.(제4항)

▶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5항)

3. 임시조치 등이 허용되는 경우

제5조(처리의 제한)

① ~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수정 2014.10.22]

제5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에도, 대상 게시물이 신청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거나 명백한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임시조치 등이 허용될 수 있다.(제5조 제2항)

▶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공직자, 언론사 등의 공인인

경우에도, 대상 게시물이 그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명백한 허위사실로 인정되거나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 또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이 허용될 수 있다.(제5조 제3항)

제5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 공인 등의 업무에 관한 게시물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내용인 경우에는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규정은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심의-제2011-09-01호의 심의결정에 최초로 적용되었다.

대법원 2002.01.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 하지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이라도 문맥과 정황에 따라서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게시물에 모욕적인 표현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이 규정에 따라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KISO는 정치를 비판하는 풍자나 패러디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욕설 등의 과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2012심13, 2012심16, 2013심6). 이런 점에서 본 규정에 따라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로 모욕적인 표현 ‘만’ 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에 대한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어 왔다.

▶ KISO는 구체적인 정황의 제시 없이 단순히 ‘OOO xx년 죽이고 싶은데’, ‘xx년 죽이려면’, ‘xx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2013심17), ‘개판’ 이라는 표현(2014심18), ‘국개의원’ 이라는 표현(2013심51) 등은 일정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거나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뉴스를 근거로 한 사실을 제시하는 내용인 경

우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14심10, 11).

6조 | 자율적 임시조치 등

7조 | 처리대상

제6조(자율적 임시조치 등)

- ①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회원사는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 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신고가 없음에도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

제7조(처리 대상)

자율적 임시조치 등의 처리대상은 다음 각호 중에 하나로 한다.

1. 창작 게시물
2. 스크랩 게시물 (단, 언론 기사의 스크랩 게시물은 제외)

1. 제정 취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이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삭제’ 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다만, 다수의 게시물이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등 그대로 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피해의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 대법원도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차단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정책규정 제6조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자율적 임시조치의 요건과 주의사항 - 제6조

▶ 자율적 임시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①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②‘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란, 첫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 둘째,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인 경우를 말하며, ③KISO의 심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KISO의 심의결정은 자율적 임시조치의 필수적 요구사항은 아니나, 가급적 KISO의 심의를 받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자율적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위 기준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KISO와 회원사는 대법원의 위 판단 기준을 적절히 참조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 회원사는 위 절차가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에 유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6조 제2항 단서)

처리대상 - 제7조

▶ 일반적인 경우 임시조치는 모든 형식의 게시물에 대해 가능하나(제3조), 자율적 임시조치는 그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딥링크 게시물’을 제외하고 ‘창작 게시물’과 ‘스크랩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02절 |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 처리

8조 | 국가적 법익 침해 게시물 처리

제8조(국가적 법익 침해 게시물 처리)

회원사는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이나 외환 등과 같은 국가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정 취지

▶ 경찰청 등의 정부기관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게시물의 불법성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이 문제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게시물에 관한 것이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부과되어 있고, 달리 정부기관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의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권리침해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44조의2는 불법정보의 처리 근거가 될 수 없다.

▶ 게다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정보가 불법정보인

지 판단할 수 없고, 자율규제기관인 KISO도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으며, 불법 여부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야 하므로, 단순히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그 요청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특정 게시물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 이에 불법정보 중 권리침해와 전혀 무관한 사항인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정부기관이 직접 회원사에게 게시물의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 국가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처리 요청에 대해서, 회원사는 직접 처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특정 정보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그 제한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하는 절차

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정보는 이에 따라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 회원사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해당 정부기관에 안내하게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03절 | 임시조치 후 게시물 심의

9조 | 심의 요청

10조 | 통지의무

제9조(심의요청)

회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게시물 게시자가 회원사가 정한 기간 내에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한 경우
2. 그 밖에 회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통지의무)

- ① 회원사는 제9조 제1호에 따라 KISO에 심의요청을 할 경우 해당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에 따라 KISO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② 회원사는 임시조치와 동시에 혹은 임시조치 후 제9조 제2호에 따라 KISO에 심의요청을 할 경우 해당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와 관련하여 KISO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제정 취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대해 그동안 공통적으로 제기되어 온 비판은 임시조치 이후의 처리방법과 처리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0일의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대상 게시물을 다시 복구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 임시조치제 도입 초기에 회원사들 중 일부는 30일의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 복구되도록 하였고, 다른 회원사는 자동 삭제되도록 하였으나, 2008년 ‘촛불사태’ 이후 정보게재자가 재게시 요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시조치 기간 만료 후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 이에 따라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비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 적법한 게시글이 권리침해 주장자의 단순한 소명만으로 영구히 삭제될 수 있게 되었고, 당시 대략 연간 10만건 정도의 게시물이 임시조치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게시물의 ‘결과적인’ 영구 삭제는 임시조치 이후에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구권이 불분명하고, 임시조치 기간인 30일 이후 처리방법이나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구 이후의 절차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임시조치제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사후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다.

▶ 임시조치가 취해진 게시물에 대한 사후처리방안으로는 법정 임시조치 기간(30일)이 종료하면 무조건 재게시하는 방안과 법정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하면 특별한 판단이 없는 한 무조건 삭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하면 게시물을 무조건 재게시하는 방안이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목적(30일 동안 접근차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30일 경과 후 재게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안이기는 하나, 서비스제공자로서는 자신의 위험으로 정보를 재게시하는 것을 꺼릴 수 있으므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재게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밖에 없다.

▶ 이에 KISO는 2012년 4월 25일 정책결정 제12호로 정보게재자의 재게시청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마침 헌법재판소도 2012년 5월 31일에 선고한 위 2010헌마88호 판결에서, “임시조치 후 ‘30일 이내’에 정보게재자의 재게시청구가 있을 경우 등 향후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정보의 불법성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권리침해 주장자와 정보게재자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라고 판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 후의 절차에 관하여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그동안 분명한 근거가 없었던 사항으로, 회원사가 임시조치와 동시에 또는 임시조치 후에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다.

2. 주요 내용

▶ 본 절에 의한 심의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에 대한 재게시 여부이다.

▶ 재게시 심의는 두 가지 경우에 개시될 수 있다.

첫째, 해당 게시물 게시자가 회원사가 정한 기간 내에 게시물에 대한 재게시 신청을 하고 회원사가 KISO에 재게시 심의를 요청한 경우, 둘째, 회원사가 임시조치와 동시에 또는 임시조치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KISO에 그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개시된다.

▶ 회원사는 제9조 제1호에 따른 재게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권리침해 주장자에게 KISO 심의가 개시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제10조 제1항).

▶ 회원사가 임시조치와 동시에 또는 임시조치를 한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KISO에 심의요청을 할 경우에도, 권리침해 주장자에게 KISO 심의가 개시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제10조 제2항).

04

검색어에 관한
정책



12조 | 원칙

제12조(원칙)

회원은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1. 연혁 또는 제정 취지

▶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 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등” 이라 한다)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들이 입력한 과거 검색어 자료를 분석해서 특정 검색어와 상호 긴밀히 연관된 검색어를 검색 입력창 또는 그 인접영역에 자동적으로 제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국내 주요 포털사들이 제공하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기능을 살펴보면, 연관검색어 기능이란 이용자들의 검색 질의 패턴을 분석하여 연관된 다양한 키워드를 제공하는 기능이며, 자동완성 기능이란 브라우저나 기타 소프트웨어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입력할 경우 신속히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 따라서 연관검색어 등은 이용자의 행동데이터에 기반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편향성이 작동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인위적 생성이나 변경을 금지하여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범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연관검색어 등의 인위적 생성 또는 변경 금지

▶ 인위적 생성 또는 변경이란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 아닌 사람이 의도적으로 새로운 검색어를 만들거나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검색어의 삭제 또는 추가를 통해 기존 검색어를 본래와 다르게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정책규정 제12조는 각 사의 고유한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를 생성·변경할 뿐, 인위적으로 생성, 변경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3. 참고 사항

▶ 연관검색어는 개인화검색 서비스에 해당되며, 개인화검색이란 이용자의 관심을 보다 빠르게 반영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색행동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추천형 서비스를 말한다.

▶ 개인화 서비스에는 다양한 기술 방식이 적용되는데, 시멘틱 웹 검색방식, 이용자 정보에 기반한 개인화 검색방식, 웹페이지를 이용한 개인화 검색방식, 쿼리확장 방식이 있다.

- 시멘틱웹 검색 방식은 웹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서 검색결과를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검색 방식을 의미하고, 이용자 정보에 기반한 개인화 검색 방식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프로파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패턴이나 관심주제를 판단해서 검색효율을 증대시켜 주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 또한 웹 페이지를 이용한 개인화 검색 방식은 이용자가 웹에서 보고 있는 문서의 특징을 추출해서 관심분야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색어를 추천하여 검색범위를 확장시키는 방식을 의미하며, 쿼리확장 방식은 검색어를 자동적으로 확장시켜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연관검색어는 쿼리확장 방식을 의미하며, 쿼리확장 방식이 작동되는 구조 역시 다양하다.

- 사용자가 처음 입력한 검색어를 주제범주별로 제시한다거나, 데이터마이닝 기법 등을 통해 이전에 방문했던 웹상의 문서들을 분석해서 추천하는 단어추출기법을 사용하거나, 동의어나 관련어 어휘사전인 시소로스(thesaurus)를 이용하거나, 유사한 빈도로 추출되는 검색어를 클러스터링(clustering)하

는 방식 등이 있다.

- 클러스터링은 검색어가 동시출현하는 빈도(co-occurrence frequency)를 측정하고 색이어간 유사도(analogous map)를 측정하여 검색어와 유사한 용어를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13조 | 예외적 삭제

제13조(예외적 삭제)

-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3.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의 검색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
 6.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7.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 8.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 9.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 10.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상업적인 용도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 ②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검색어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연혁 또는 제정 취지

▶ 이 서비스는 회원사들의 고유한 기술적 처리방식을 통해 제공되는 편익장치이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등’ 이라 한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인하여 연관검색어 생성이 비정상적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한편, 연관검색어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입력된 검색어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상 사건을 정리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 탈세, 여자문제, 성희롱 등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연관검색어는 선정된 순간부터 사실 여부를 떠나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연관검색어의 대

상이 되는 당사자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도 가지고 있다.

▶ 이에 연관검색어 등의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회원사들이 지켜야 할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 연관검색어 등에 대한 인위적인 생성이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경우 불법성을 포함하고 있는 연관검색어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즉, 규범의 준수를 통해 실현되는 법적 안정성이 예외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잃는 결과를 낳는다.

▶ 따라서 연관검색어 등에 대한 인위적인 생성이나 변경 금지 원칙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면서 예외적으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는 것의 그 실질은 인위적인 생성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정책규정 제13조는 인위적인 생성이나 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12조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2. 주요 내용

예외적인 제외 및 삭제(제1항)

제13조(예외적 삭제)

-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못한다.

즉, 제한적으로 예외사유를 열거함으로써 자의적인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1) 개인정보 노출(제1호)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생존한 자연인, 개인 관련성, 식별가능성, 결합가능성을 그 요소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2)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6호)

-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므로, 사망자나 태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단체에 관한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 개인정보 노출이란 특정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이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자체로 노출되거나 또는 그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그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는 이유는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만들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대포통장, 대포폰 등이 범죄 등에 사용될 경우 정보주체도 명의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고,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도 이러한 개인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금지행위나 처벌은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누설·유출한 행위자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 그러나 연관검색어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행태기반에 근거하여 기계적 알고리즘

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누설·유출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취지는 정보주체에게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는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연관검색어 등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 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2)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한 권리침해(제2호)

2.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①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②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일 것, ③-1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③-2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 그러므로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①, ②, ③-1

요건 또는 ①, ②, ③-2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경우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검색어도 본호의 규정과 동일하게 처리된다(제2항).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호에서 말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은 일반적인 의미의 ‘공인’ 이나 ‘공적 존재’ 보다 좁은 개념이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제5조 제2항에 대한 해설의 해당 부분과 같다.

3)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아닌 자에 대한 권리침해(제3호)

3.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사가 비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한 검색어를 제외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①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 자일 것, ②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일 것, ③-1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③-2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제2호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하는 요건에 관한 것이라면,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4)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제4호)

4.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검색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①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일 것, ②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을 것, ③ 연관검색어 등으로 비하적인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을 필요로 한다.

▶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비하나 왜곡, 모독은 유엔인권헌장의 정신을 위반하는 비인간적 행위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평화, 국민화합을 추구하는 국제체제마저도 위협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³⁾

▶ 그런데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사실상 국가체계를 위협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위협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이다.

▶ 최근 영호남 갈등을 조장하거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사이트의 활동은 사회적인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여 사회 분열을 일으키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 이 정책규정은 그 동안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및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KISO 입장에서는 사회통합과 안정이라는 사회적 법익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율규제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5)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관검색어 등의 검색결과 부존재 및 무관한 검색결과의 경우(제5호)

3) 심영섭,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 리뷰, KISO 저널 제 11호, 2013.6.

5.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의 검색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

▶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검색결과와 검색어가 무관한 경우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검색어를 제외시키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①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일 것, ②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의 검색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이는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검색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 검색어로 현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반면, 검색어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규정이다.

6) 명백한 저작권 침해(제6호)

6.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

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때 발생하는 권리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10조).

▶ 저작권을 침해하는 검색어는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검색결과를 유도하는 검색어를 의미한다.

-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란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명백한 저작권 침해를 별도로 검색어 제외 사유로 분류한 것은 불법성 검색어 중 저작권을 침해하는 검색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그만큼 저작권침해가 많아진 결과이다.

7)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 노출(제7호)

7.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음란·도박 등 불법정보는 정보

통신망에 유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부담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教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음란·도박의 의미

-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1)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9228 판결).

(판례2)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 **(선정적인 정보)** 음란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지만 선정적인 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선정적인 정보는 불법정보는 아니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서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다.

-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 음란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는 성표현이라면, 저속은 헌법의 보호를 받은 성표현을 의미하는데, 선정성은 저속한 표현에 해당한다.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안에 있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8)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삭제 요청(제8호)

8.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 연관검색어 등으로 피해를 받은 자가 법원으로부터 연관검색어 등 삭제의 가처분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란 행정기관이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할 것을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회원사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 회원사가 이에 대한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며,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집행부정지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제기로 인해 청구대상물에 대한 시효진행이 중단되는 등의 효과가 인정되나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의 제기가 그 대상이 되는 당해 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이는 당사자의 권리 보호보다는 행정작용의 계속성보장에 그 중점이 있다.

9) 현저한 이용자 불편초래 및 서비스 질 저하(제9호)

9.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검색어를 제외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오타는 컴퓨터 자판을 입력하는 경우 문자, 부호,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욕설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을 의미하며, 비속어는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을 의미한다.

▶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은 실제로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삭제를 하

거나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은 불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장려할 사항도 아니다. 오히려 오타는 우리글인 한글의 아름다움 또는 한글 맞춤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며, 욕설, 비속어 등도 청소년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따라서,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이 검색어에 포함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 처리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10) 상업적인 용도 등 비정상적인 남용(제10호)

10.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상업적인 용도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상업적인 용도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란 어뷰징을 의미한다.

- 어뷰징이란 부정행위 또는 조작을 의미하며, 검색어의 생성이 사용자가 해당 검색어를 검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달리 이용자들의 동향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어가 생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 어뷰징에는 검색순위 조작, 검색결과 조작, 부정클릭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 이러한 어뷰징성 검색어는 어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생성되거나 실제 이용자들의 검색결과로 형성된 검색어가 아니라 왜곡에 의해 형성된 결과이기 때문에 제외처리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그러나 어뷰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11)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경우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검색어 처리(제2항)

②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검색어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 게시물에 관한 처리의 경우 정책규정 제5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공인 및 공직자 등의 경우 공적 지위를 벗어난 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를 공적 관심사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동일하게 연관검색어 등의 경우에도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검색어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엄격한 요건 하에 삭제 또는 제외처리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따라서 ‘정무직 공인 등 공인’ 이 공적지위를 벗어난 후 연관 검색어 등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①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②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일 것, ③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일 것, ④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충족시켜야 한다.

▶ 단, 게시물의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자, 언론사 등에도 공적 지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에 관한 게시물은 공적 관심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 다만 본 조항에서 연관검색어 등의 경우에는 기타 공인 및 공직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게시물과 연관검색어 등을 차별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연관검색어 등의 경우에도 게시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05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14조 |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제14조(목적)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읽고, 듣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인터넷은 이를 위한 중요한 소통 및 참여의 공간이다.

이 장은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연혁 및 제정 취지

▶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운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2011년 10월 5일 결정된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을 최초로 하여, 2012년 2월 16일 “선거기간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2012년 3월 28일에 게시물 처리 관련 정책을 포함하는 추가 결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선거는 정치적 공간에서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중요한 제도로, 온라인에서의 활동과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방식의 선거 홍보와 캠페인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오늘날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소통과 정보의 통로로 역할하고 있다.

▶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정보의 유통을 통해 정치적 학습의 장이자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정치적 관심을 넓히고 참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잠재된 이해와 갈등이 표출되면서 첨예한 의견의 대립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습도 일상화되었다.

▶ 기본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터넷 이용에 있어 포털 서비스가 갖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 과정을 통해 포털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정치적 행위와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유권자들의 인식과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선거 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론의 공간으로서 포털 서비스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 상황이 나타나는 선거기간 중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담은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자 관련 정책을 결정하였다.

2. 주요 내용

▶ 제14조에 나타난 다음의 내용, 즉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

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포털 사업자가 선거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활동으로서 규약을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중립성’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결정문 상에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정책결정의 내용은 선거후보나 정당의 불필요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담고 있다.

▶ 선거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이 감시되고 통제될 수 있으나, 그 밖에 합법 또는 불법을 가늠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포털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선거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KISO에서 결정한 선거정보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은 특정인의 이해를 도모하거나 반하지 않도록 ‘부당한 규칙’을 만들지 않는데 있다.

15조 | 검색 서비스의 제공

제15조(검색 서비스의 제공)

회원사가 제공하는 선거관련 검색결과는 각사가 정보서비스를 위해 기술적으로 채택한 알고리즘에 따르며 선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제정 취지

▶ 검색서비스는 포털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로 통합검색을 기본으로 하여 기능별, 내용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서도 유권자들이 선거정보를 습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5조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검색 결과의 산출 및 제공에 있어서 회원사의 기본적 정책 지향을 밝히고 있다.

▶ 즉 제15조는 회원사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의 내용이 각사가 고유의 기술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알고리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검색 결과의 산출 및 처리에 있어서 선거 관련 이해 당사자의 부당한 요구나 간섭에서 자유로운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 검색서비스에서 특정 키워드에 대해 이루어지는 검색결과의 추출은 각사가 보유한 검색엔진별로 설계된 알고리즘에 기반해 있다. 검색엔진이 작동하여 검색결과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은 사업적 특성상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보안사항이고 노출되었을 때 다양한 어뷰징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포털의 이용, 그중에서도 검색을 활용한 정보의 습득이 일상화되면서 검색결과가 제시하는 내용이 이용자들의 인식 전

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다양한 차원에서의 요구가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한 상업적 측면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요구들이다.

▶ 특히, 온라인PR회사들의 경우 검색엔진최적화(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기법을 적용하여 검색엔진의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분석 및 홍보에 적용함으로써 PR을 의뢰해 온 고객들의 사이트나 정보가 검색 결과에 추출될 가능성을 높이려고 시도한다. PR회사에 의한 검색엔진의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과 이를 활용한 홍보는 검색 결과에 공정하지 못한 인위적인 정보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검색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포털 서비스 제공자의 지속적인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PR회사들처럼 SEO를 선거 캠페인 전략으로 구사하기도 한다. 아울러 특정 조직이나 후보의 부당한 요구나 불만 해소를 위해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후보자 관련 정보를 수정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서비스 행태를 특정 후보의 요구로 수정하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제한된 차원에서 이용자 편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의해 규칙이 훼손된 것’으로 이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하겠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제15조는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선

거관련 검색 결과의 현출은 각사가 정보서비스를 위해 기술적으로 채택한 알고리즘에 따르며 선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16조 | 후보자정보의 제공

제16조(후보자정보의 제공)

- ① 선거기간 동안 회원사가 제공하는 후보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한다.
- ② 회원사가 인물정보와 구분하여 후보자정보를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후보자 이름 등을 검색어로 하는 검색결과에서 동명이인 후보자정보를 화면에 노출하는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구가 서로 다른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선거구 아이디 순서
 2. 선거구가 같은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호 순서

1. 제정 취지

▶ 후보자의 인명 정보는 가장 중요한 선거자료의 하나이다. KISO 회원사들은 각 사별로 별도의 인명DB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DB에 포함된 내용이 공인된 자료라 말하기 힘들다. 그동안 KISO 회원사들은 인명 정보의 구축에 있어서 선거 당사자가 직접 자기기입하는 방식, 타 인명DB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그리고 각 사 별로 언론 기사 등을 통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서 자체 수정하는 방식 등을 활용했는데, 근원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게시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제16조는 KISO 회원사들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정보를

취합하고 제시하는 데 있어 공인되고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후보자 관련 정보 제공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출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을 제정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후보자정보의 출처 - 제1항

▶ 제1항의 내용은 선거기간 중 이용자들에게 일관되고 정확한 후보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KISO회원사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정보를 서비스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선거기간 외에 개별 회원사들이 운영하는 인명DB와는 별도로 선거기간 중에는 국가기관에서 공인된 이루어진 선거 후보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동명이인 후보자의 노출순서 - 제2항

▶ 동명이인의 경우, 기존 회원사별 인명DB에서는 처리하는 기준이 각기 달랐으나, 후보자 정보 서비스에서는 공통된 기준을 정해서 ①선거구가 서로 다른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선거구 아이디 순서, ②선거구가 같은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호 순서로 처리

키로 하였다.

▶ 이러한 기준의 제시는 후보자 정보의 배열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후보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도모하였다.

17조 | 검색어의 처리

제17조(검색어의 처리)

-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권리침해를 사유로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
 2. 예비후보자
 3.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4.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2.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1. 제정 취지

▶ 제17조는 선거기간 중에 검색어 처리에 적용할 선거후보자들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선거후보자들이 연관검색어 및 자

동완성 검색어가 권리침해를 이유로 '삭제 및 제외요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열거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에 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제17조를 통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 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 후보자, 출마의사를 밝힌 자까지를 '한시적 공인'으로 특정하여, 선거기간 중 공인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공인의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후보자와 관련한 선거정보 및 게시물의 처리를 공인에 준용하여 적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불법의 영역이 아니라면 보다 폭 넓게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는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함이다.

2. 주요 내용

선거기간 중 검색어 삭제 및 제외 요청자의 범위 - 제1항

▶ 제1항에서 말하는 '연관검색어'는 '관련검색어'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용자들의 검색 질의 패턴을 분석하여 특정한 검색키워드에 의한 검색결과 화면 상단에 그 키워드와 연관된 다양한 키워드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연관검색어는 사용자가 특정 단어를 검색한 후 연이어 많이 검색한 검색어를 자동 로직에 의해 추출하여 제공하는 이용자 편의 서비스의 하나이다. 연관검색어는 검색한 단어에 대해 관련 검색어를 제공함으로써 확장된 주제 혹은 상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자동완성 검색어’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할 때 키워드의 입력이 끝나기 전에 그 입력한 문자열을 포함한 검색어 리스트를 자동으로 제시하여 사용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서비스이다. 이는 국내 주요 포털의 검색서비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용자의 검색패턴이 반영된 결과를 자동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참여형’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 제1항에서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는 자의 범위를 ①후보자 ②예비후보자 ③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④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와 함께 선거출마의사를 표방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자를 동일하게 간주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 여기에서 “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하고,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 제1항에서 ‘출마의사를 표방한 자’까지 포함시킨 것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어서 후보자와 후보 예정자간의 불평등한 검색어 삭제 정책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과정은 절차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행위자의 실질적인 활동도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하고자 했다.

제1항의 적용기간 - 제2항

▶ 제2항은 제1항의 적용기간을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명확히 정의 내리고 있다. 아울러 만일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 시점까지로 적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의하면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로 설정하여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로 명시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적용기간을 예비후보등록일부터 당선자 확정시까지로 설정하여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간을 확장하였다.

적용의 예외조항 - 제3항

▶ 제3항은 후보자에 대해 공인의 차원에서 검색어 처리가 이

루어져야 하지만,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검색어 제외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폭넓은 비판이 허용되고 상호 교차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족됨은 물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8조 | 게시물의 처리

제18조(게시물의 처리)

- ① 선거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른다.
 1. 선거기간 중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후보자일 경우 회원사는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접수단계에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후보자 등에 대한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 회원사는 핫라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처리 지침을 요청하는 등 불법 또는 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결정에 따른다.
- ②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한 경우에도 제1항 제1호를 준용한다.

1. 제정 취지

▶ 게시물의 처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제2장의 ‘게시물에 관한 정책’에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거관련 게시물의 처리는 1차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게시물이 불법이 아닌 이유로 공직선거법 상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장자와 게시물 게시자, 그리고 해당 게시물을 매개하는 포털사업자 모두에게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관계로, 이 법이 남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 이에 제18조에서는 선거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선거관련 게시물의 임시조치를 일반 게시물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해서 선거과정에서 이용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지침 - 제1항

▶ 제1항의 내용은 임시조치 요청시 적용되고 있는 제5조 ‘처

리의 제한' 을 통한 기본적인 적용 이외에 선거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조치의 과도한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5조에서 KISO는 임시조치가 남용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 요청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거나 처리 제외대상자를 설정하는 등의 정책결정을 담고 있는데, 이외에도 선거기간에 적용되는 게시물의 처리 정책은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선거 후보자일 경우 회원사는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접수단계에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선거기간 중 정당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도록 했고,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핫라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리 지침을 요청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후보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제2항

▶ 제2항은 후보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에 나타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은 다음과 같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해당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이 있을 때에도 임시조치의 요청시와 마찬가지로 접수단계에서 해당 게시물의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선거 관련 정보의 공정성 확보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처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19조 | 적용범위

제19조(적용범위)

이 장의 정책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적용된다.

1. 제정 취지

▶ 제19조에서는 선거정보 서비스 정책이 적용되는 범위를 선거의 사회적 관심도와 중요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함께 사회적 영향력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감안하여 교육감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포함하는 4대 공직선거로 범위를 규정하였다.

2. 주요 내용

▶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그리고 교육감선거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원 및 기초의회선거의 경우 회원사들이 현실적으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게 되어 이 역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기초의회 의원(시, 군, 구 의회)에 입후보한 공식후보자 수만 1,034개 선거구에서 5,414명(예비후보 제외)에 이르렀는데, 이처럼 많은 예비후보 및 후보자가 참여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회원사의 서비스 운영에 있어 일부 과도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06

차별적 표현 완화 등을
위한 특별 정책 등



01절 |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제20조(목적)

인터넷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 각 회원사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은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하고, 그 표현이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을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절은 회원사에게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게시물 제한)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1. 연혁 및 제정 취지

▶ 인터넷 공간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간으로,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특히,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다른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를 게재하는데 드는 비용이 다른 미디어에 비해 적다는 측면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원활히 발현되는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 하지만 오히려 다수에 대해 특정 지역, 장애, 인종, 출신국가,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대해 비하적인 표현이 만연하고, 이

에 동조하는 게시물 등이 대다수일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는 심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인터넷의 부작용으로서 이러한 다수에 의한 소수자의 위축 효과 생산은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사)한국인터넷 자유편정책기구는 2013년 4월 17일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 (정책규정 제13조 1항 제4호)을 발표하고, 2013년 8월 6일 ‘인터넷 공간의 집단 양극화’ 토론회 등을 통해 해당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 정치권에서도 2013년 본 절과 유사한 사항을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논의가 이루어 진적이 있으나, 입법화에는 실패하였으며, 이른바 혐오 표현(hate speech)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등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 KISO 정책위원회에서는 2013년 5월 이른바 ‘노알라’ 검색 관련 심의부터 지역 차별 등의 정보로 야기되는 사회갈등, 집단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 왔다.

▶ 논의과정에서 매개하는 미디어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회집단 간의 극화(polarization)는 여론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현상으로 판단하였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사회 갈등을 인

위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위축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 이러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적 표현 또는 ‘차별적 낙인찍기’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절을 규정하게 되었다.

2. 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표현에 대한 제도적 규제장치 부재

▶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혐오표현(hate speech)’으로 나타나며, 이는 대상 집단에 대한 내면적 혐오감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나 증오는 편견과 차별, 적대적 감정을 동반 하여 큰 상처를 안긴다.

▶ 우리 헌법은 개인 또는 집단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헌법 제21조 제4항)함으로써 권리나 명예를 침범하는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근거해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에서는 타인의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다양한 규제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한 자가 개인일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장치가 존재하지만, 지역이나 특정한 인구사회학적 계층일 경우 그 피해가 개인에게 특정화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법률적인 제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그로 인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은 국가에 의한 형벌적 규제가 쉽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 해외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장치가 있는 경우가 있다.

- 영국에서는 2010년 일반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Equality Act, 2010)’이 제정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국가/출신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 1976)’, 2006년에는 ‘인종/종교혐오금지법(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이 제정되었다.

- 독일에서는 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에 근거한 대중증오선동죄(Volksverhetzung)로 처벌한다.

- 뉴질랜드에서는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을 통해 집단의 피부색, 인종 등을 이유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한다.

▶ 한국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표현이 독립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닌 집단이나 범주라면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제 장치가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자율규제 영역으로 회원사 약관에 기반한 최소한의 규칙제정

▶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의 사회적 용인 정도’가 불명확한 점도 이러한 규제를 어렵게 만든다. 다른 한편에서, 국가가 이러한 표현에 대해 형사적이고 행정적으로 직접규제를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에서 본 절은 자율규제기구에서만 할 수 있는 온전한 의미의 자율규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절이 갖는 중요한 의의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성격이 있음에도 법령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삭제가 가능한 측면에는 각 회원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을 근거로 하고 있다.

▶ 따라서 본 절의 내용은 회원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각 회원사가 자사의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본 규칙보다 더 강하게 차별적 표현 등을 약관 등을 통해 제재하는 것은 본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의 경우, 포털서비스 운영자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 연관검색어 등의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여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정보 자체는 삭제하지 못하였다. 본 절의 내용은 일정부분의 이용자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여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3. 주요 내용

집단 간의 비판적 표현과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을 구분

▶ 인터넷 공간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면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비판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자율규제 대상으로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비판이 그 한계를 넘어설 경우, 이는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본 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장려하기보다 오히려 그 특정 집단에 대한 위축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게시물 등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목적에 분명히 제시한 것이다.

삭제기준을 한정

▶ 구체적인 삭제 기준을 살펴보면,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어야 한다.

‘등’을 통해 해당 사안으로 국한하여 해석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조건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취득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 사회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된 것이다.

▶ 즉, 한 개인을 구분짓는 인구사회학적 속성으로서 집단범주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해당 구성원들 모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권리침해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집단에 대한 편견이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이 같은 ‘생태학적 오류’는 개인 간 갈등을 사회 또는 집단 간 갈등으로 증폭시키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 그러나 사회적 담론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단순한 차별의 게시물까지 모두 삭제할 경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에 KISO는 아래 두 가지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경우에만 삭제가 가능하도록 구성요건을 제한했다.

-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여

야 한다.

▶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은 게시물 등이 표현하는 차별적인 내용이 그 표현 자체나 제시한 자료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저열하고 과도한 표현인지를 주로 판단한다. 정책위원회의 심의에서는 특정 집단을 지역 차별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욕설 등이 포함된 표현이 주로 활용된 경우 모욕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단지 과거의 신문자료나 역사적인 자료를 발췌한 자료를 근거로 든 경우에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여야 한다는 점은 ‘피아’의 구분을 통해 특정 집단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위원회의 심의사례에서는 욕설 혹은 극단적인 편향성을 가진 자료를 발췌하여 ‘오로지’ 특정집단을 공격하기 위해 게시된 글의 경우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단서규정을 통해,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인의 공적업무에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적용 예외사유로 삼도록 하였다. 이는 공인의 공적업무는 그것이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더라도 폭넓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알 권

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게시물의 경우 정책규정 제2장 제1절(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02절 |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제22조(목적)

본 절은 생명존중의 인터넷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3조(게시물 등 제한)

회원은 자살과 관련된 유해 게시물이나 커뮤니티를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한다.

제24조(커뮤니티 등 제한)

회원은 카페 등 커뮤니티 명칭에 자살·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방조 또는 유인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명칭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

제25조(긴급한 게시물 특칙)

회원은 신고 등을 통해 자살 시도의 긴급성과 위험성이 있는 게시물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제26조(검색 특칙)

회원은 '자살' 및 '동반자살' 검색어의 검색 시 자살 예방 상담기관 등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1. 연혁 및 제정 취지

▶ 한국은 2003년 이후 10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2013)에 따르면 2013년 당시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4,427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8.5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서 6.0명(26.5%)이 증가하는 등 점점 심각

4) 출처 : OECD.STAT, Health Status Data(2014. 9. 기준),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4 Countrie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해지고 있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40대와 50대는 사망원인 순위 2위이다. 이를 OECD 국가 간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과 비교해 보면, 때 OECD 평균 12.1명에 비해, 한국은 29.1명('12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⁴⁾

▶ 특정한 개인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사회구조적인 측면까지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급격한 정보화 과정을 겪으면서,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매개적인 역할을 일부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 ‘자살 사이트’로 통칭되는 이러한 인터넷상의 자살정보들은 자살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자살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반 자살’ 사이트들과 다르게 ‘친 자살’ 사이트들은 1) 자극적인 소재의 하나인 죽음을 극대화시켜 주목을 이끌고, 2) 죽을 권리를 옹호하면서 자살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함께 자살을 감행하는 데 일조한다.

▶ 인터넷을 통해 습득된 자살관련 정보가 모방자살을 이끌거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른바 자살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 커뮤니티, 그리고 검색어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졌다.

▶ KISO는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자살을 간접적으로나마 예방하고, 생명존중의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2년 6월 7일 자살 예방에 관한 정책결정을 통해 인터넷상의 자살 정보 차단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2. 의의

▶ 본 절은 정책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 같이 국가로부터의 이용자의 소극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이 아닌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또한, 단순히 게시물을 삭제하고 커뮤니티의 명칭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제25조에서 회원사의 적극적인 신고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자살이 우려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구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자살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언론계의 경우, (사)한국기자협회가 「자살보도 윤리강령」을 마련해서 언론보도가 자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윤리강령에 따르면,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함' 을 강조하면서 모두 7가지 실천강령을 세웠다. 이와 함께 (사)한국기자협회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자살보도에 대한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 KISO의 자살예방정책은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윤리강령」과 목적은 비슷하지만, 회원사들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천적인 책무활동이라 할 수 있다.

▶ 본 정책규정을 근거로 2015년 1월 1일 KISO-경찰청 간 자살시도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자살 시도자의 구호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주요내용

자살 관련 게시물, 동반 자살 커뮤니티 등 인지했을 때 삭제 의무 - 제23조, 제24조

▶ 본 절의 제23조 제24조는 자살 관련 게시물, 동반 자살 커뮤니티 등을 신고 등으로 회원사가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살의 경우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게시물 및 커뮤니티가 음성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삭제 근거를 마련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커뮤니티의 경우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고, 단순히 자살 관련 게시물이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커뮤니티를 폐쇄할 경우 어뷰징 등이 우려되어 우선적으로는 커뮤니티의 이름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자살을 방지하거나 자살을 단념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살우려가 높은 게시물 인지시 유관기관에 신고 - 제25조

▶ 제25조는 자살 시도가 예상되는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인지되면 회원사들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신고는 자살예방을 위한 일종의 핫라인 체제로서 공동규제의 전형적인 모델을 띠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는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IP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여서는 안되지만,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부득이 제3자인 경찰 등에 제공할 상황이 동반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률적 면책이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생명을 구한다는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논리도 존재한다.

▶ 제25조는 국내 인터넷자율규제의 법적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중요성이 법률적 리스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KISO의 입장이다.

▶ 다만, 사업자는 제25조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경찰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본 조항은 급박한 우려가 있는 일부 게시물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자살관련 키워드 검색시 예방정책 노출 - 제26조

▶ 제26조는 자살 관련 키워드 검색시 자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처음에 노출되게 하는 것으로 회원사의 검색결과를 일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수정하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현재 모든 회원사는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자살 상담 전화 등을 노출하고 있다.

▶ 이는 검색결과 노출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배열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매우 적극적인 미디어서비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보매개자로서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능동적으로 구현하는 조항이다.

4. 참고자료

(사)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

죽음의 방식은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며 언론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준칙을 지켜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언론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주변상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2.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3.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해서는 안된다. 단,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언론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해서는 안된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7.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03절 |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

제27조(목적)

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 계정 및 게시물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8조(계정)

- ① 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

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계정 폐쇄 요구 등)

- ①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2.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3.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
- ②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제정 취지

▶ 인터넷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사자의 권리물이 누적되는 가운데 죽은 자(死者, 이하 사자)의 디지털유산(遺産)에 대한 권리 분쟁이 국내외에서 쟁점화 되었다.

▶ 사자의 디지털유산이라 함은 인터넷이용자가 ‘사망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⁵⁾’ (한국법제연구원, 2011)에서부터 보다 좁게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 남겨진 이용자 작성 또는 보관의 디지털 정보⁶⁾’ (김기중, 2010)로 정의할 수 있다.

▶ 디지털유산 처리가 주목받은 것은 2004년 11월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엘스워스(J. M. Ellesworth) 병장의 부모가 야후(Yahoo!)에 아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요청하면서 부터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이 발생한 이

5) 김현수 외, ‘디지털 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1.11.30., p. 20.

6) 김기중, ‘死者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적 한계 및 개선방안’,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0.10.13., p.23.

후 그 유족들이 사망한 자녀들의 ‘미니홈피’ 나 블로그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디지털 유산’ 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사안이 시급히 풀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 디지털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입법안이 나오는 등 제도화 논의가 이어졌다.

- 미국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관하여는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아이다호,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에서 주 차원에서의 입법추진이 있어왔고, 지난 2014년 8월 12일 델라웨어 주에서는 스콧(Scott) 상원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계정 및 유산의 관리 권한을 제공하는 법안⁷⁾이 시행된 바 있다.
- 국내에서는 다수의 의원입법안들이 나왔지만, 디지털유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가운데, 사자의 디지털유산을 둘러싼 이용자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늘어가면서 이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자율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KISO는 2010년 10월 13일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당시 상속인에게 사망한 사람의 저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7) ‘AN ACT TO AMEND TITLE 12 OF THE DELAWARE CODE RELATION TO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ND DIGITAL ACCOUNTS’, 2014.5.15.

룰(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 규정, 같은 법 제49조의 정보통신망 비밀 침해 금지 등에 위반하는 것인지 등 그 여부를 폭 넓게 검토하였다.

▶ 뿐만 아니라 KISO는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와 관련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기존에 발표된 법률안을 검토하고 법률개정 방향성을 제시하였다.⁸⁾ 이 보고서에서 KISO는 사자의 디지털유산과 관련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세부 처리 절차,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즉, 법률안과 자율규제 권고안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KISO는 이 보고서에서 “디지털 유산(사망한 회원의 계정과 관련 콘텐츠) 처리 기준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위 규정에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이상 사업자들의 자율 규약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국내에서 사자의 디지털유산 처리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자율규약으로 이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정책결정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

8)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2011),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개인정보, 계정, 게시물 등) 처리방안 연구보고서, 방송통신정책연구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실에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그 이전이라도 우선 필요한 절차와 제공가능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안내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2. 주요 내용

디지털정보의 상속성을 확인

▶ 이 규정은 디지털정보가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행법상 상속은 구체적 재산의 형태를 묻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속해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 따라서 디지털유산 역시 특별법에 의하여 그 승계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민법상 상속제도에 의하여 일반적·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 다만, 통신비밀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이 있어 일부 권리는 제한적인 상속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자율규제로서 본 절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권리의 승계를 허용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온라인 계정 접속권을 상속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KISO는 ‘디지털 정보’에 재산권적 성격이 있고 일정한 권리

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디지털 정보’ 인 ‘디지털 유산’도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그 권리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KISO는 제28조에서 회원사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밝혀 계정 접속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 온라인 계정은 이용자의 아이디(ID), 비밀번호, 개인신원 정보, 이용정보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개인이 맺은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일종의 채권적 권리를 포함한다.

채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이 인정되지만, 하나의 온라인 계정으로 복합적인 서비스 기능이 구현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 계정은 단순히 재산적 가치만이 아니라 비재산적 가치 또는 인격적 가치가 병존해 있다.

▶ KISO가 온라인 계정 접속권을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한 민법 제1005조 단서규정을 의식한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의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공간에서 그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 하며, 사망자 개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개인정보이기도 하므로, 피상속인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상속인의 개인식별정보나 계정을 이용하는 중에 기록된 각종 활동, SNS 상의 관계망 정보 등은 인격의 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KISO는 계정을 인격권 보호 관점에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온라인 계정의 상속을 허용하면, 계정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속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 있는 디지털정보는 상속

▶ KISO는 제28조 2항에서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정보는 온라인서비스 내에서의 화폐, 사이버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함)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는 제외된다.(법제연구원, 2011).
- 한편,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경제적 가치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경제성에 대해서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피상속인이 맺은 약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이 경제적 화폐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적립되는 등 그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정 폐쇄 절차 안내

▶ 사망자의 계정이 존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리상의 어려움 및 이를 통한 사망자의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다. 사망자의 계정이 존속되어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피해 및 관리상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절차를 명문화 한 것이다. 이 규정은 상속인들이 사업자에게 어떤 절차를 통해 계정폐쇄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절차를 제기하고 있다.

▶ 상속인은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같은 소명 내용은 해외의 구글, 페이스북 등과 유사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다.

백업 서비스

▶ 상속인은 사업자에게 디지털유산을 백업해주는 편익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상속인이 인터넷서비스 공간에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자산을 모으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계정 없이 접근이 어려운 자산이 많아서이다. 특히, 피상속인의 디지털계정을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를 대신하여 해당 정보에 접근하여 제공하는 창구가 마련되어야만 실질적인 유산상속행위가 가능해 진다.

▶ 이러한 디지털유산 백업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개별 사업자의 재량권으로 간주했다.

발행일 : 2015년 10월 27일

발행인 : 이석우

저자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이해완 정책위원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경오 정책위원 (법무법인 한중),

김기중 정책위원 (법무법인 양재),

배영 정책위원 (송실대 정보사회학과),

황용석 정책위원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김대기 정책위원(카카오),

김성욱 정책위원(네이버),

김태열 정책위원(SK커뮤니케이션즈)

디자인 : 신원프린팅

발행처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출판등록 : 제2014-000131

주소 : 135-87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전화 : 02-6959-5206

홈페이지 : www.kiso.or.kr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는 생략합니다.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135-87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7층(삼성동, 현대타워)
tel.02.6959.5206 e-mail.kiso@kiso.or.kr